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9
----------	-----

발의연월일 : 2024. 11. 13.

발의자 : 이정애, 박은경, 김지훈(민),
김상수, 박경원, 한근수,
이진환, 이경숙, 김동훈,
이수련, 한송연

1. 제안 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인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3조)
- 다.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라.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및 역할 규정(안 제5조)
- 마. 세부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련법령

- 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남양주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남양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 총괄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응
6. 보안관제 및 보안사고 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남양주시, 경기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업무
8. 그 밖에 시장이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 인정하는 업무

제6조(세부사항)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는 국가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287호, 2024.03.05.)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사이버보안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소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4287호, 일부개정 2024. 03. 05.)

제3조의2(사이버안보 업무의 기획·조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이하 "사이버안보정보 업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이하 "사이버보안 업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및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2.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3.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시 보안대책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신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는 제외한다. [본조제목개정 2024.3.5.]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목개정 2024. 3. 5.]

제8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3.5.]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